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<http://www.kma.org>] / 전화(02)6350-6560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백영기 [6574] / 보험급여팀장 고영옥 [6572] / 팀원 이승아 [6560] / 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2311호

시행일자 2025. 5. 30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심사지침」 신설 및 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기준운영부-1307 (2025. 5. 30.)

2. 위 호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4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 업무 처리기준」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하였는바,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요 내용

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(총 4항목)

구분	제목	주요 내용
신설	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에 Tisagenlecleucel(품명: 킴리아주) 투여시 이전 항암화학요법의 '불응성'에 대한 판단기준	심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
신설	골다공증 약제 사용에 있어 다334가 골밀도 검사(DXA)의 결과(중심골)의 평가 방법	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
신설	Denosumab 주사제(품명: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주 등) 투여간격 인정기준	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
개정	자485 무탐침정위기법(기본)하에 천두술을 이용하여 생검,흡인, 병소절제, 혈중제거시 수가산정방법	고시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

시행일

- 2025년 6월 1일 진료분부터

관련문의

항목	담당부서	연락처
킴리아주 '불응성' 관련	약제기준부	033-739-1327
골다공증 약제 사용 시 골밀도 검사 평가방법		033-739-1350
Denosumab 주사제 투여간격		033-739-1354
자485 무탐침정위기법 관련	상대가치개선부	033-739-1598

※ 세부사항은 첨부과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붙임 : 「심사지침」 (공고 제2025-132호)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 시도지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